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희망찬 농업, 활기찬 농촌, 행복한 국민
농림축산식품부
Ministry of Agriculture, Food and Rural Affairs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http://www.mafra.go.kr
http://www.mosf.go.kr

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보도자료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김호철 과장(044-203-5630), 고상미 서기관(5631)
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김경미 과장(044-201-2051), 이정석 사무관(2052)
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 박성훈 과장(044-215-4450), 조성아 사무관(4455)

쌀 관세화 예정대로 금년 1월부터 시행
- 미국·중국 등 5개국, 이의 제기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◇ **(쌀 관세화 시행) 쌀 관세화 조치**는 WTO 검증과는 별개로 WTO 농업협정에 따라 국내 법령 개정을 통해 **'15.1.1일부터 시행**

○ 「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」 및 「관세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해 관세화 시행 근거 마련('14.12.30일자 관보 게재)

◇ **(이의제기 현황)** 미국·중국·호주·태국·베트남 5개국은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한 **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WTO 사무국에 이의를 제기**

* (WTO 통보내용) 쌀 관세율 513%, 특별긴급관세(SSG) 부과, 2014년 기준 TRQ 물량 408,700톤은 기존과 같이 유지

○ 앞으로 이의제기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가 통보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나갈 계획

❑ 정부는 세계무역기구(WTO) 사무국 확인 등을 거쳐, 미국·중국·호주·태국·베트남 5개국이 우리나라가 지난해 9.30일 WTO에 통보한 **관세율 513%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** 지난해 말 **이의를 제기**했다고 밝혔다.

○ 이들 5개 국가는 **한국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**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❑ 정부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**우리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**될 수 있도록 WTO 검증 대응에 **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**

* (향후 검증절차) 이의제기 국가들과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이의제기가 모두 철회되면 WTO 사무총장은 인증서(Certificate)를 발급하게 됨. 이후 정부가 WTO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면 인증서는 효력을 발생하게 됨

❑ **쌀 관세화 조치**는 WTO 검증과 상관없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**'15.1.1일부터 시행 중**이며, 정부는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'14.12.30일자로 완료하였다.

○ 「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」 개정을 통해 쌀 관세율 513%를 적용하고, 「관세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해 특별긴급관세(SSG)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였다.

❑ 한편, 정부는 지난해 7.18일, 20년간 지속되어 온 쌀 관세화 특별대우를 종료하고 '15.1.1일부터 관세화하기로 결정하고, 같은 해 9.30일, 관세율 513%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한 바 있다.

* (WTO 통보내용) 쌀 관세율 513%, 특별긴급관세(SSG) 부과, 2014년 기준 TRQ 물량 408,700톤은 기존과 같이 유지